

October 13, 2020

Legal Update

Policy and Law Report _Vol.55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9. 28. ~ 10. 12.) -

법무법인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들은 빠짐 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이 불의의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로 제공되는 “정보 및 동향”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기재부]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2020. 9. 28.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9.29)을 위한 관련 규정과 절차 개정,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함. 본 제도는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고, 본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의 외화자금 중개 기능 저하시 자금 수급 불안이 외환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입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제도 시행



[금융위 · 금감원1]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2020. 10. 5. 증권사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조달금리를 기준금리(증권사 자체 선정)로 변경하여 매월 재산정하고, 가산금리도 원칙적으로 매월 재산정하여 대출금리에 반영, ②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가 구분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 ③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 산정기준 마련)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투명한 산정기준 적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업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 · 금감원2]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 10. 6.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감안,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하여 기업 부담 일부 완화, ②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③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등이 있음

[참고자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2020. 10. 6. 국무회의에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시 구축비용 저리용자,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의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참고자료]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포 법안

[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9. 29.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심사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제9조의2 제1항,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안 제9조의5신설), ②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안 제9조의2 제2항, 제3항) 등이 있음.

> 입법예고 법안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안

2020. 9. 28.부터 법령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② 가맹본부에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배제를 완화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③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여 가맹거래사 제도의 신뢰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제정안

2020. 9. 28.부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되는 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 ②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③ 중개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⑥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이 있음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정안

2020. 10. 8.부터 신설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등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며, 대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에 관한 현황 자료 미제출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② 처분시효 관련 조사 개시일 의미 구체화, ③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 ④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 ⑤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등이 있음.

> 법률 발의안

[정무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5인)」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며,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 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 변경 및 운용규제 일원화, ② 부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 도입, ③ 불합리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시·견제책임 부여 등이 있음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상호출자의 금지 대상인 계열회사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제하고(안 제9조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외국법인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 상호출자를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2인)」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을 도입하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는 방향으로 법집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대기업집단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거래행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환노위]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채불 임금등 · 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당금 신청 ·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채불 임금등 · 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임금 체불등의 사실 확인만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체당금의 우선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7조의3 신설 등)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이들 2개 ‘앱 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인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 ·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 9호 신설)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유보신고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의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력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8조의2 신설)

[과방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등 15인)」

국가기관등의 장이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사전에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소명의 부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 요청에 대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입법G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정부입법 제·개정 사항 및 동향,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상의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 u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홍정아 (Claudia Chong-Ah Hong)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문응필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최유리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